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년월일 : 2011. 6. .

의안 번호	58
----------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6,838천원으로써, 이중 12건에 839,94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계(12건)	839,940천원
○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103,000천원
○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8,712천원
○ 폭설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73,000천원
○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12,479천원
○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5,427천원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223,589천원
○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20,563천원
○ 조선왕조실록 및 조성왕실의궤 제자리찾기사업		40,000천원
○ 태풍 「곤파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8,450천원
○ 추석연휴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000천원
○ 배상금 지급		100,000천원
○ 구제역방지 공동방재단 운영		27,720천원 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9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